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5.

의안 번호	335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박다미)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부터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안 제1조(목적)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자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가 위임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의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위임조례는 상위법령과 일체가 되어 시행되나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필수업무 범위와 필수종사자의 범위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법률과 조례의 모두 포괄하여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적용대상)에서는 강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주민이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적절한 규정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또한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본문 중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실태조사)에서는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다른 실태조사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인 바 지원계획 다음에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2항 중 후단인 '이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바 법 제11조의 지원계획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4호 중 '법령등'은 정의나 약칭이 아니므로 띄어 쓴 '법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지원사업)제1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조건은 노사관계나 채용계약 등에 따라 결정되어 실효성 있는 규정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근무환경 개선은 그 사업장의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정부(고용노동부)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제2항에서는 위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후단인 ‘이 경우’는 삭제하고 위탁규정을 안내적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제6조의 제목을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7조(위원회 설치)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지역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재한 것으로 보임. 제2항에서는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조례로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져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 ‘필수업무 종사자 매뉴얼(202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위원회 구성)제1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국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당연직’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해당 직위가 지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바 ‘기획경제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임명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사용하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남구의원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 구의원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다른 자치단체 구의원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9조(위원회 운영)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2항을 재기재한 것임.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한 규정이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법적 성격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 이후 재난시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필수업무 종사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건강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35호

제안일자 : 2024.4.25.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임을 명시적 규정하고자 함

○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용어의 명확한 근거 규정 표기(안제1조, 안제7조제3항)

○ 불필요한 용어를 수정・정비(안제4조제2항, 안제5조제1항제4호, 안제6조, 안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으로, “국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전단 중 “있으며, 이 경우”를 “있으며,”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령등”을 “법령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으며, 이 경우”를 “있으며,”로 한다.

안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 중 “업무 담당 국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을 “강남구의회 소속”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 ---------- ---------- ----------.
제4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실태조사) ①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있으며,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 ---------- ---------- ---------- ----------.
1. ~ 3. (생 략)	1. ~ 3. (원안과 같음)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 법령 등--------- ----------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있으며,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원안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원안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 ---------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③ ----------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 -------- 강남구의회 소속 ----------
2. ~ 4. (생 략)	2. ~ 4. (원안과 같음)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

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